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수사·조사 시 체육단체 징계 중지 및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한 이관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97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시 수사·조사 시 체육단체 징계 중지	2
2.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한 이관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중오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9. 2.
3. 회 부 일: 2025.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수사·조사 시 체육단체 징계 중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생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u><신설></u>	⑬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검토의견

-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¹⁾.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체육단체의 재량으로 우선 징계처분이 가능한 상황임.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 ⑧ <생략>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징계 관련 규정]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운영규정

제21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가맹단체, 시·도지회 상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른바 ‘셀프 징계’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²⁾³⁾. 개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중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셀프 징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2) 연합뉴스, 「‘갑질·성희롱 논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재심의 신청 기각」, 2025.10.28.

3) 제주mbc, 「잇따르는 체육회장 비리… 제도개선 필요」, 2025.6.30.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률에 따라 고발과 징계요구의 권한이 있다는 측면에서⁵⁾, 감사원⁶⁾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조사·수사와 징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징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신속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셀프 징계 등의 우려가 없고 폭력, 아동학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위행위자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나, 보완요구, 재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⁷⁾하고 있는데,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절차의 진

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⑤ ~ ⑬ <생략>

6)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행이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을 보고 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의 서면 통지 등 일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⁹⁾.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9)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문체부 수정안
<신 설>	⑬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5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⑭ 스포츠윤리센터가 제13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신 설>	<신 설>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의 서면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단체는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은 관련 징계 시효에서 제외한다.

2.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밖의 체육단체의 임원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징계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9제1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생략) <u><신설></u>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의 임원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징계권한을 갖는다.</u>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2. 그 밖의 체육단체의 임원: <u>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u>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u>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⑮ ----- ----- ----- -----제11항·제12항----- ----- -----기간·정도 및-----

령으로 정한다.	제13항·제14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범위 등에----- -----.
----------	---

- 최근 민간 체육단체의 징계처분 지연이나, 부적정한 징계 경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실주의(혈연·학연·지연 등)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권고한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권고안¹⁰⁾]

☐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 정실주의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 민간 종목·가맹단체의 산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과 관련된 비위 사건(인권침해,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사건 진행을 해당 민간 종목·가맹단체의 직속 상급단체에서 관할하도록 규정
- ※ 상급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님

- 이에 따라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 심의 기관 독립성 강화, 징계관할권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징계 심의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 지정, 위원 구성 추천 할당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맹단체 임원 등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관할권을 갖게 될 예정임.

10) 의안번호 제2023-989호, 2023.12.18. 의결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제도 개선 현황]

- * **스포츠공정위원회 독립성 강화**(‘25.3월 추천위 개최, ’25.4.2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 (기존) 회장 주도 구성 → (변경) 외부기관(대한변협, 체육학회, 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 스포츠윤리센터, 문체부 등) 지정, 위원 구성 추천 할당제

*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관할권 상향**

징계 대상	징계 관할	
	현행	향후 개선방안
체육회 임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체회 법제상벌위원회)	▶
중앙종목단체 임원	중앙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애인 중앙종목단체 법제상벌위원회)	
시·도체육회 임원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애인 시·도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체회 법제상벌위원회) ※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체회 법제상벌위원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체회 법제상벌위원회)

※ 체육회 임원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권자에게 직무정지·해임을 건의·요구 할 수 있어, 이미 간접적인 관리·감독 권한 보유 (공공기관운영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과 같이 체육단체의 징계권한을 상급단체가 갖도록 할 경우 징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체육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대해 상급기관이 징계요구권 등만을 가지고 있음¹¹⁾.

11) 참고자료: 징계권한 관련 입법례 참고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②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관할권 상향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③ 대한체육회 임원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징계권한을 법에 명시할 경우,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른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율성 보장과 상충할 우려¹²⁾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12) IOC 「올림픽 헌장」('24.7.23.)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

6. NOCs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9. 올림픽헌장 위배 시 내려진 제재 및 기타 조치 외에, **해당 국가에서 발효 중인 헌법, 법률 혹은 기타 규정 및 정부나 기타 기관의 행위로 인해 NOC의 활동이나 NOC의 의사 표명이 저해될 경우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에 내린 인준을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등, 해당 NOC 소속 국가에서의 올림픽 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참고자료: 징계권한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u>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u>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u>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u> ③ <u>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u>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u>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u>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